

##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-1178호

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9월 25일

국토교통부장관

###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#### 1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중 도청 소재지인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이 개정(법률 제20936호, 2025. 4. 22. 공포, 2025. 10. 23. 시행)됨에 따라,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대상지역을 현행 둘 이상의 시·도 지역에서 도청소재대도시간 지역까지 확대하는 한편,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플랫폼운송사업 허가와 관련된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지원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운송사업 경영 및 주차편

의 제고를 위하여 현행 등록 차고지에서만 가능한 밤샘 주차를 「주차장법」상 노외 및 부설주차장에서도 허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

## 2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0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(교통서비스정책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가. 의견서 제출

- 의견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개 정 안	수 정 안	의 견

### 나. 보내실 곳

- 주소 : (우편번호: 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

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장

- 팩스 : 044-201-5582

### 3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) 「정보마당-법령정보/입법예고·행정예고」를 참조하시거나,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(전화 044-201-3330, [ssong1206@korea.kr](mailto:ssong1206@korea.kr)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